

광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단516136(본소), 2021가단622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손해배상]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이 사건 본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2,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주 북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실손의료비담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별지
지급리스트 ‘피보험자’란 기재 각 피보험자들(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 한다)에게
안면코복잡시술 및 정맥수액요법의 진료행위를 시행하고,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위 지급리스트
‘합산금액’란 기재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 보험금으로 위
지급리스트 ‘비급여항목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82,63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위법한 피고의 임의비급여 수령

피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시행한 안면코복잡시술 및 정맥수액요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복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른 급여나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가 위 안면코복잡시술 및 정맥수액요법 비용을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이다.

2)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입원이나 통원시의 보상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또는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위 안면코복잡시술이나 정맥수액요법의 진료비를 피고에게 비급여 항목으로 지급하고 진료비 계산서를 발행받은 뒤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여 원고로부터 위 지급리스트 ‘비급여항목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가 위 피보험자들로부터 임의비급여를 건강보험법상 비급여로 진료비를 지급받고 그 진료비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고, 위 피보험자들에게 이를 원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으라고 하면서 진료비 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안면코복잡시술 및 정맥수액요법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입원이나 통원시의 보상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또는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급여, 즉 이른바 법정비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안면코복잡시술 및 정맥수액요법은 국민건강보험이 정하고 있는 이른바 법정 비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그 진료비를 비급여 금액으로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진료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보험자들에게 위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 법정비급여가 아닌 이른바 임의비급여 진료비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피보험자들 역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험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원고가 수십명에 달하는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반환청구를 할 경우 보험금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가 부당하게 수령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행사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인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및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실손의료비 비급여부분 합계82,6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다만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금전채권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위 피보험자들의 무자력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예외적으로 위 피보험자들의 자력 유무와 상관없이 위 피보험자들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피대위채권과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각각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원고의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피고의 진료행위를 두고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관련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피보전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대위채권이 먼저 행사되어야 하는 등의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법률상계약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은 성질상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 아닌 한 원고 주장의 피대위채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이행이 가능한 것이어서, 위 피보전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피대위채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거나 피대위채권을 먼저 행사하지 아니하면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에 법률상 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이 다수라거나 그에 대한 지급 금액이 소액이어서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의료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 경과 및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반환받는 것이 법률적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반환청구를 한다면 그 보험금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대위권이 원고 소제기의 현실적정책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채권자대위권의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성'의 개념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돌려 쓴 보험금 지급 및 반환 관계는 원고와 이 사건 피보험자들 사이에 먼저 해결되는 것이 마땅하고 제3자인 피고에게 그 위험을 돌릴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피보험자들이 제기할지 모르는 민원이나 보험업 감독 기관과의 마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험성을 회피하고자 이제 와 피고를 통하여 일시에 그 손해를 전보받고자 하는 것은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 및 그 이행에 따른 위험부담을 부당히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4) 따라서 이 부분 본소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이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한 진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잘못 기재한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료비 청구서의 내용을 믿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7264 판결 참조). 그리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설령 피고가 별지 지급리스트 기재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여 이를 피보험자들로부터 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피보험자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보험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 그 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같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726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고의중과실로 악의적모해적영리적 목적으로 피보험자들에게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행위가 불법의료행위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

101

[illegible]

序号	人员姓名	性别	出生日期	身份证号	学历	专业	职称	现任职务	原任职务	备注
001	张三	男	1985-01-01	110101198501010001	本科	计算机科学与技术	助理工程师	软件开发部	软件开发部	
002	李四	女	1990-03-15	110102199003150002	本科	会计学	会计师	财务部	财务部	
003	王五	男	1988-07-22	110103198807220003	本科	市场营销	销售经理	销售部	销售部	
004	赵六	女	1992-05-10	110104199205100004	本科	人力资源管理	人力资源专员	人力资源部	人力资源部	
005	孙七	男	1987-09-08	110105198709080005	本科	法学	律师	法务部	法务部	
006	周八	女	1991-11-25	110106199111250006	本科	英语	英语教师	英语教研室	英语教研室	
007	吴九	男	1989-04-18	110107198904180007	本科	机械设计制造及其自动化	机械工程师	机械部	机械部	
008	郑十	女	1993-02-03	110108199302030008	本科	电子商务	电子商务专员	电子商务部	电子商务部	
009	冯十一	男	1986-06-12	110109198606120009	本科	工商管理	工商管理师	运营部	运营部	
010	陈十二	女	1994-08-27	110110199408270010	本科	新闻学	新闻编辑	编辑部	编辑部	
011	林十三	男	1988-10-05	110111198810050011	本科	土木工程	土木工程师	工程部	工程部	
012	黄十四	女	1990-12-19	110112199012190012	本科	金融学	金融分析师	金融部	金融部	
013	周十五	男	1987-03-07	110113198703070013	本科	物流管理	物流师	物流部	物流部	
014	吴十六	女	1992-07-14	110114199207140014	本科	环境工程	环境工程师	环保部	环保部	
015	郑十七	男	1989-09-21	110115198909210015	本科	信息管理与信息系统	信息管理师	信息中心	信息中心	
016	冯十八	女	1991-01-28	110116199101280016	本科	统计学	统计师	统计部	统计部	
017	孙十九	男	1986-05-16	110117198605160017	本科	软件工程	软件工程师	软件部	软件部	
018	周二十	女	1993-11-02	110118199311020018	本科	公共事业管理	公共事业管理师	公共事业部	公共事业部	
019	吴二十一	男	1988-04-20	110119198804200019	本科	工商管理	工商管理师	运营部	运营部	
020	郑二十二	女	1990-08-09	110120199008090020	本科	新闻学	新闻编辑	编辑部	编辑部	
021	冯二十三	男	1987-12-25	110121198712250021	本科	土木工程	土木工程师	工程部	工程部	
022	孙二十四	女	1992-06-11	110122199206110022	本科	金融学	金融分析师	金融部	金融部	
023	周二十五	男	1989-10-03	110123198910030023	本科	物流管理	物流师	物流部	物流部	
024	吴二十六	女	1991-02-17	110124199102170024	本科	环境工程	环境工程师	环保部	环保部	
025	郑二十七	男	1986-07-29	110125198607290025	本科	信息管理与信息系统	信息管理师	信息中心	信息中心	
026	冯二十八	女	1993-03-14	110126199303140026	本科	统计学	统计师	统计部	统计部	
027	孙二十九	男	1988-09-06	110127198809060027	本科	软件工程	软件工程师	软件部	软件部	
028	周三十	女	1990-11-23	110128199011230028	本科	公共事业管理	公共事业管理师	公共事业部	公共事业部	
029	吴三十一	男	1987-05-01	110129198705010029	本科	工商管理	工商管理师	运营部	运营部	
030	郑三十二	女	1992-09-18	110130199209180030	本科	新闻学	新闻编辑	编辑部	编辑部	
031	冯三十三	男	1989-01-04	110131198901040031	本科	土木工程	土木工程师	工程部	工程部	
032	周三十四	女	1991-05-22	110132199105220032	本科	金融学	金融分析师	金融部	金融部	
033	周四十五	男	1986-11-09	110133198611090033	本科	物流管理	物流师	物流部	物流部	
034	吴三十六	女	1993-04-26	110134199304260034	本科	环境工程	环境工程师	环保部	环保部	
035	郑三十七	男	1988-08-13	110135198808130035	本科	信息管理与信息系统	信息管理师	信息中心	信息中心	
036	冯三十八	女	1990-12-01	110136199012010036	本科	统计学	统计师	统计部	统计部	
037	孙三十九	男	1987-06-19	110137198706190037	本科	软件工程	软件工程师	软件部	软件部	
038	周四十	女	1992-10-07	110138199210070038	本科	公共事业管理	公共事业管理师	公共事业部	公共事业部	
039	吴四十一	男	1989-02-24	110139198902240039	本科	工商管理	工商管理师	运营部	运营部	
040	郑四十二	女	1991-06-11	110140199106110040	本科	新闻学	新闻编辑	编辑部	编辑部	
041	冯四十三	男	1988-10-28	110141198810280041	本科	土木工程	土木工程师	工程部	工程部	
042	周四十四	女	1990-02-15	110142199002150042	本科	金融学	金融分析师	金融部	金融部	
043	周五十五	男	1987-08-03	110143198708030043	本科	物流管理	物流师	物流部	物流部	
044	吴四十六	女	1992-12-20	110144199212200044	本科	环境工程	环境工程师	环保部	环保部	
045	郑四十七	男	1989-04-07	110145198904070045	本科	信息管理与信息系统	信息管理师	信息中心	信息中心	
046	冯四十八	女	1991-08-24	110146199108240046	本科	统计学	统计师	统计部	统计部	
047	周四十九	男	1986-12-11	110147198612110047	本科	软件工程	软件工程师	软件部	软件部	
048	周五十	女	1993-05-29	110148199305290048	本科	公共事业管理	公共事业管理师	公共事业部	公共事业部	
049	吴五十一	男	1988-09-16	110149198809160049	本科	工商管理	工商管理师	运营部	运营部	
050	郑五十二	女	1990-01-03	110150199001030050	本科	新闻学	新闻编辑	编辑部	编辑部	
051	冯五十三	男	1987-05-20	110151198705200051	本科	土木工程	土木工程师	工程部	工程部	
052	周五十四	女	1992-09-07	110152199209070052	本科	金融学	金融分析师	金融部	金融部	
053	周六十五	男	1989-03-24	110153198903240053	本科	物流管理	物流师	物流部	物流部	
054	吴五十六	女	1991-07-11	110154199107110054	本科	环境工程	环境工程师	环保部	环保部	
055	郑五十七	男	1986-11-28	110155198611280055	本科	信息管理与信息系统	信息管理师	信息中心	信息中心	
056	冯五十八	女	1990-04-15	110156199004150056	本科	统计学	统计师	统计部	统计部	
057	周五十九	男	1987-08-02	110157198708020057	本科	软件工程	软件工程师	软件部	软件部	
058	周六十	女	1992-12-19	110158199212190058	本科	公共事业管理	公共事业管理师	公共事业部	公共事业部	
059	吴六十一	男	1989-06-06	110159198906060059	本科	工商管理	工商管理师	运营部	运营部	
060	郑六十二	女	1990-10-23	110160199010230060	本科	新闻学	新闻编辑	编辑部	编辑部	
061	冯六十三	男	1987-02-10	110161198702100061	本科	土木工程	土木工程师	工程部	工程部	
062	周六十四	女	1992-06-27	110162199206270062	本科	金融学	金融分析师	金融部	金融部	
063	周日十五	男	1989-10-14	110163198910140063	本科	物流管理	物流师	物流部	物流部	
064	吴六十六	女	1991-02-01	110164199102010064	本科	环境工程	环境工程师	环保部	环保部	
065	郑六十七	男	1986-06-18	110165198606180065	本科	信息管理与信息系统	信息管理师	信息中心	信息中心	
066	冯六十八	女	1990-10-05	110166199010050066	本科	统计学	统计师	统计部	统计部	
067	周六十九	男	1987-04-22	110167198704220067	本科	软件工程	软件工程师	软件部	软件部	
068	周日十	女	1992-08-09	110168199208090068	本科	公共事业管理	公共事业管理师	公共事业部	公共事业部	
069	吴七十一	男	1989-12-26	110169198912260069	本科	工商管理	工商管理师	运营部	运营部	
070	郑七十二	女	1990-04-13	110170199004130070	本科	新闻学	新闻编辑	编辑部	编辑部	
071	冯七十二	男	1987-08-30	110171198708300071	本科	土木工程	土木工程师	工程部	工程部	
072	周六十三	女	1992-12-17	110172199212170072	本科	金融学	金融分析师	金融部	金融部	
073	周日十四	男	1989-05-04	110173198905040073	本科	物流管理	物流师	物流部	物流部	
074	吴七十六	女	1991-09-21	110174199109210074	本科	环境工程	环境工程师	环保部	环保部	
075	郑七十七	男	1986-01-08	110175198601080075	本科	信息管理与信息系统	信息管理师	信息中心	信息中心	
076	冯七十八	女	1990-05-25	110176199005250076	本科	统计学	统计师	统计部	统计部	
077	周六十九	男	1987-09-12	110177198709120077	本科	软件工程	软件工程师	软件部	软件部	
078	周日十	女	1992-01-29	110178199201290078	本科	公共事业管理	公共事业管理师	公共事业部	公共事业部	
079	吴八十一	男	1989-06-16	110179198906160079	本科	工商管理	工商管理师	运营部	运营部	
080	郑八十二	女	1990-10-03	110180199010030080	本科	新闻学	新闻编辑	编辑部	编辑部	
081	冯八十三	男	1987-02-20	110181198702200081	本科	土木工程	土木工程师	工程部	工程部	
082	周六十四	女	1992-06-07	110182199206070082	本科	金融学	金融分析师	金融部	金融部	
083	周日十五	男	1989-10-24	110183198910240083	本科	物流管理	物流师	物流部	物流部	
084	吴八十六	女	1991-03-11	110184199103110084	本科	环境工程	环境工程师	环保部	环保部	
085	郑八十七	男	1986-07-28	110185198607280085	本科	信息管理与信息系统	信息管理师	信息中心	信息中心	
086	冯八十八	女	1990-11-15	110186199011150086	本科	统计学	统计师	统计部	统计部	
087	周六十九	男	1987-05-02	110187198705020087	本科	软件工程	软件工程师	软件部	软件部	
088	周日十	女	1992-09-19	110188199209190088	本科	公共事业管理	公共事业管理师	公共事业部	公共事业部	
089	吴九十一	男	1989-03-06	110189198903060089	本科	工商管理	工商管理师	运营部	运营部	
090	郑九十二	女	1990-07-23	110190199007230090	本科	新闻学	新闻编辑	编辑部	编辑部	
091	冯九十三	男	1987-11-10	110191198711100091	本科	土木工程	土木工程师	工程部	工程部	
092	周六十四	女	1992-03-27	110192199203270092	本科	金融学	金融分析师	金融部	金融部	
093	周日十五	男	1989-07-14	110193198907140093	本科	物流管理	物流师	物流部	物流部	
094	吴九十六	女	1991-11-01	110194199111010094	本科	环境工程	环境工程师	环保部	环保部	
095	郑九十七	男	1986-04-18	110195198604180095	本科	信息管理与信息系统	信息管理师	信息中心	信息中心	
096	冯九十八	女	1990-08-05	110196199008050096	本科	统计学	统计师	统计部	统计部	
097	周六十九	男	1987-12-22	110197198712220097	本科	软件工程	软件工程师	软件部	软件部	
098	周日十	女	1992-04-09	110198199204090098	本科	公共事业管理	公共事业管理师	公共事业部	公共事业部	
099	吴一百零一	男	1989-08-26	110199198908260099	本科	工商管理	工商管理师	运营部	运营部	
100	郑一百零二	女	1990-12-13	110200199012130100	本科	新闻学	新闻编辑	编辑部	编辑部	
101	冯一百零三	男	1987-04-30	110201198704300101	本科	土木工程	土木工程师	工程部	工程部	
102	周六零四	女	1992-08-17	110202199208170102	本科	金融学	金融分析师	金融部	金融部	
103	周日零五	男	1989-12-04	110203198912040103	本科	物流管理	物流师	物流部	物流部	
104	吴一百零六	女	1991-04-21	110204199104210104	本科	环境工程	环境工程师	环保部	环保部	
105	郑一百零七	男	1986-08-08	110205198608080105	本科	信息管理与信息系统	信息管理师	信息中心	信息中心	
106	冯一百零八	女	1990-12-25	110206199012250106	本科	统计学	统计师	统计部	统计部	
107	周六零九	男	1987-06-12	110207198706120107	本科	软件工程	软件工程师	软件部	软件部	
108	周日一十	女	1992-10-29	110208199210290108	本科	公共事业管理	公共事业管理师	公共事业部	公共事业部	
109	吴一百一十一	男	1989-02-16	110209198902160109	本科	工商管理	工商管理师	运营部	运营部	
110	郑一百一十二	女	1990-06-03	110210199006030110	本科	新闻学	新闻编辑	编辑部	编辑部	
111	冯一百一十三	男	1987-10-20	110211198710200111	本科	土木工程	土木工程师	工程部	工程部	
112	周六一十四	女	1992-02-07	110212199202070112	本科	金融学	金融分析师	金融部	金融部	
113	周日一五	男	1989-06-24	110213198906240113	本科	物流管理	物流师	物流部	物流部	
114	吴一百一十六	女	1991-10-11	110214199110110114	本科	环境工程	环境工程师	环保部	环保部	
115	郑一百一十七	男	1986-02-28	110215198602280115	本科	信息管理与信息系统	信息管理师	信息中心	信息中心	
116	冯一百一十八	女	1990-07-15	110216199007150116	本科	统计学	统计师	统计部	统计部	
117	周六一十九	男	1987-11-02	110217198711020117	本科	软件工程	软件工程师	软件部	软件部	
118	周日二十	女	1992-03-19	110218199203190118	本科	公共事业管理	公共事业管理师	公共事业部	公共事业部	
119	吴一百二十一	男	1989-07-06	110219198907060119	本科	工商管理	工商管理师	运营部	运营部	
120	郑一百二十二	女	1990-11-23	110220199011230120	本科	新闻学	新闻编辑	编辑部	编辑部	
121	冯一百二十三	男	1987-03-10	110221198703100121	本科	土木工程	土木工程师	工程部	工程部	
122	周六二四	女	1992-07-27	110222199207270122	本科	金融学	金融分析师	金融部	金融部	
123										

[illegible]

[illegi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